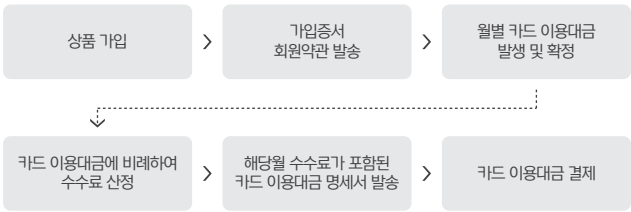


채무면제·유예상품 회원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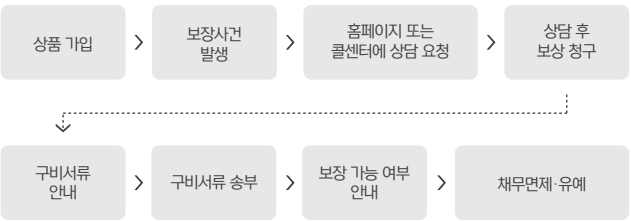
www.hyundaicard.com

수수료 청구 및 결제 절차



현대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을 보장 받으시려면?

보상 제공 대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고객센터 1588-3483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상품 명칭 변경안내

- 2013. 05월부터 금감원 지침에 따라 '신용보장서비스', '결제금액보장서비스' 명칭이 '채무면제·유예상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대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회원약관

제1조(약관의 목적)

이 회원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현대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개인회원 간에 체결된 현대카드 채무면제 유예상품(이하 "상품"이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상품의 성격)

- 1. 이 상품은 보장대상자에게 발생한 보장사건으로 인해, 이 상품의 가입에 동의한 개인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이 카드 이용대금을 즉시 결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채무를 면제하거나 상환을 유예함으로써 회원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유료 금융상품입니다.
- 2. 이 상품은 보험법에 의한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 3. 이 상품의 가입 및 해지는 회원의 선택사항이며 상품에 가입할 경우 회원은 매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4. 회원은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카드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품가입자 : 회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중 이 상품의 가입에 동의한 회원
- 보장대상자 : 상품가입자(회원) 본인 (단, 가족형의 경우 아래의 가족을 포함)
- 가족 : 회원의 법률상의 배우자와 미혼인 자녀(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양녀)
- 상품기간 : 상품을 가입한 날의 다음날 00:00시부터 상품의 보장이 종료 또는 상품계약이 해지된 날의 24:00시까지의 기간
- 보장사건 : 이 약관 부칙(보장사건별 보증 제공 기준 등)에서 정한 사건 중 회원이 선택하여 가입증서에 기재된 것
- 수수료 산정 기준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합니다.) : 회원의 개인카드에 이용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각 해당 수수료, 이자, 연체료를 포함하여 회원이 회사에 결제하여야 할 카드 이용대금 총 합계금액을 말하며, 이는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기재된 해당월 청구금액과 미청구잔액(해당월에 청구되지 않았지만, 추후 청구될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 연회비 및 부정매출, 금융부정의 사유로 회사가 청구 중지한 금액 및 법인카드 이용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품채무액 : 보장채무액(이하 "채무액"이라 합니다.)은 보장사건 발생일 직전 청구시점의 청구금액 및 미도래 청구잔액과 이후 보장사건 발생일까지의 이용금액의 합
- 결제금액 : 제6항의 기준금액 중 회원이 회사에 결제하여야 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명기된 해당월 청구금액
- 의사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

제4조(상품의 신청, 개시와 종료)

- 1. 회원은 본인에 의한 가입신청서 작성, 통산수단을 이용한 가입의사 표명,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 상품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효력은 회원이 가입한 다음날의 00:00시부터 개시(상품 개시일)됩니다.
-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 계약은 종료됩니다.
- 가. 상품의 가입자가 가입증서에 표시된 보장연령(만 60세)을 초과한 때, 이 경우 회사는 보장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상품 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 나. 상품 가입자가 부칙에 의거한 사유로 인하여 보상을 받거나, 치명적 장애, 질병 등 보장 사고로 보장 한도액을 소진하여 보상받은 때, 이 경우 회사는 상품 가입자의 채무면제 또는 보상신청을 접수한 때에 보상으로 인해 상품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상품가입자 또는 보장 대상자에게 안내합니다.

제5조(약관 고보 및 설명의무 등)

- 1. 회사는 카드 회원이 상품 가입을 신청할 경우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상품 가입이 승인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상품 가입자에게 약관, 상품 가입증서 및 핵심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드리며, 카드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추가 발송해 드립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 회사는 상품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상품명, 상품의 성격, 수수료, 보증내용, 채무면제·유예 신청방법 및 제3조의 가입 전 알릴 의무 등 상품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이에 대한 상품 가입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3.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관, 가입신청서 부분, 상품가입증서 및 핵심설명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상품신청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가입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회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가입신청서 부분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5. 제3항에 따라 가입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수수료로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제6조(상품가입의 철회)

- 1. 회원은 이 상품의 가입을 신청한 날 또는 상품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경우, 회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수수료를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단, 상품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결제 승인된 상품수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3. 상품가입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장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회원이 보장사건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7조(상품가입의 무효)

회원 또는 보장대상자가 상품가입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을 무효로 하며 청구 및 결제된 수수료는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 1. 나이가 만 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 2. 삼신산실자 또는 삼신박자인 경우

제8조(상품수수료)

- 1. 회원은 상품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합니다.)를 매월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결제 승인 시점부터 1개월간 1개월간의 보장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 2. 수수료는 회원의 매월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작성기준일의 기준금액에 회사가 정하는 일정률(이하 "수수료율"이라 합니다.)을 곱하여 매월 청구되며, 매월 청구된 수수료는 회원의 신용카드 결제 승인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합니다.
- 3. 회원의 신용카드 상태 및 신용상태, 회사의 시스템 문제 등으로 회사가 해당월에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익월 수수료와 합산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 4. 회원이 납부한 수수료는 이 상품상의 보장에 대한 대가이므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5. 손해를 보상할의 현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보장 기간 중에 상품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품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 근거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예정일 6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상품 가입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6. 수수료율의 변경 예정 사실을 통보 받은 회원이 적용예정일까지 상품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수수료율의 변경 예정 통보 시 변경일 전까지 상품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7.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회사는 수수료율의 변경사실을 회사의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제9조(상품계약의 해지)

- 1. 이 상품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보장사건에 대해서는 이 약관상의 보장이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2. 아래의 경우에 이 상품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됩니다. 해지 또는 종료의 시점은 해당 일(날)의 24:00시로 합니다.
- 가. 회원이 상품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회원의 신용카드 상태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첫 번째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결제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단, 해지 이전에 발생한 보장사건에 대해서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나. 회원은 보장기간 중에 해지의 의사를 회사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상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품 보장기간은 해지일 24:00까지입니다.
- 다.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품 계약을 해지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불가항력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해지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② 회원, 보증 대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고의로 보장 사건을 발생시킨 때,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상품 가입자(그 상속인 포함)가 보장 청구를 위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장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상의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④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상품 가입자가 2개월 연속 상품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카드는 10영업일 전까지 상품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카드 미사용으로 채무액이 없어 회사에서 상품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 회원이 회사의 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 나. 회원의 신용카드가 해지, 탈취, 상한된 경우
- 다. 회원이 타 신용카드 연체 및 대외금융기관 불량회원으로 등록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라. 카드의 분실, 전단파 대출, 반점 조치, 현금매출(카드강), 제3자의 요청 거래중지, 카드 사용한도가 없는 경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 마. 기타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제10조(회사가 제공하는 보증의 내용)

회사는 보증대상자에게 상품 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증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래 각호와 같이 채무를 면제하거나, 채무의 상환을 유예해 드립니다. 아래 제1항의 내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에 의한 보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보상 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채무면제 보장
가. 회사는 보장기간 중에 보증대상자에게 채무면제 보증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 약관에 따라 회원의 채무액을 면제합니다. 채무액은 보증사건 발생일 직전 청구시점의 청구금액 및 미도래 청구잔액과 이후 보증사건 발생일까지의 이용금액을 포함합니다. 회사는 면제된 채무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회원의 채무액을 면제하는 경우 회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으로 면제됩니다.
- 나. 회원이 위 각목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채무액을 이미 변제한 경우에는 회사는 동 금액을 다른 채무(할부금융, 일반대출, 보증채무 등)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회원(사망 시 상속인 포함)에게 환급합니다.
- 다. 보증사건별 채무면제 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외사항 및 조건은 부칙 (보증사건별 보증제공 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2. 상환유예 보장
가. 회사는 보장기간 중에 보증대상자에게 상환유예 보증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 약관에 따라 회원의 결제금액 상환을 유예합니다. 상환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결제일에 해당 결제금액을 결제하지 않으셔도 연체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나. 회원은 제1항의 상환유예 보장을 제공받는 동안에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사용은 이러한 보증이 종료된 이후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전액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일부 결제하신 후에 가능합니다.
- 다. 상환유예 보증이 제공되는 동안에는 유예된 채무에 대한 마일리지, 포인트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된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마일리지, 포인트 등이 제공됩니다.
- 라. 보증사건별 상환유예 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외사항 및 조건은 부칙 (보증사건별 보증제공 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3. 보장한도액
이 상품 가입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채무면제 및 상환유예 채무액은 회원당 최대 5천만원(면제된 채무액 또는 상환유예의 경우는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단, 보증사건별 한도액은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4. 보장 청구 기간
보증 청구 가능 기간은 보증사고의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제11조(보증 제외 사항)

- 회사는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 1. 보증대상자의 고의로 인한 상태, 사망 또는 입원 단, 상품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후에 발생한 자살은 제외합니다.
 - 2.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폭동, 소요, 테러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력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4. 위 3항 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 5. 상기 외에 부칙에 별도로 정한 사유

제12조(상품 가입 전 알릴 의무)

회원은 상품 가입을 신청할 때, 가입신청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하는 병력 사항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1.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 2. 회원이 적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드사는 약관 변경 예정통보 시 적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으로 사전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이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 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상품 가입자가 1개월 이내에

제14조(약관의 변경)

- 1.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 2. 회원이 적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드사는 약관 변경 예정통보 시 적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으로 사전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이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 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상품 가입자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제공)

- 1. 회사는 이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에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원의 아래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나. 회원이 가입한 이 상품의 세부 내용
 - 다. 회원의 채무액 등 신용카드 관련 정보
 - 라. 회원의 상태, 질병에 관한 정보

제16조(분쟁의 조정)

상품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회사가 제작한 안내장의 효력)

회사가 이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한 안내장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회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상품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약관의 해석)

- 1. 회사는 신의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회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약관상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해 회사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약관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9조(관할 법원)

이 상품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보증사건별 보증 제공 기준 등

제10조에 정한 채무면제 또는 상환유예 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사건 및 그에 따른 세부 보증 내용은 아래 각항에 따릅니다.

- 1. 사망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기간 중에 보증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회원의 채무액을 면제합니다.
 - ② 상품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이 상품은 종료됩니다.
- 나. 이 보증사건 발생일은 사망일로 합니다.
- 다. 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상품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살로 사망한 경우
 - ②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보장을 받은 경우,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마.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
 - ① 회원의 상속인이 보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래 ②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구비서류 : 보장청구서(회사 양식), 사망입증 서류(사망진단서 포함) 및 회사가 요청하는 그 밖의 서류
 - ③ 회사는 회원의 상속인이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연체로, 상품의 해지 및 상환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치명적 질병 진단

* 2009년 5월 15일 이전 가입상품은 치명적질병 I , 2009년 5월 16일 이후 가입상품은 치명적질병 II에 규정한 보장내용에 따릅니다.

2-1. 치명적 질병 I

-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증대상자가 보장기간 중에 치명적 질병 진단(주요 장기 이식수술 포함. 이하 같습니다.)을 받은 경우, 회원의 채무액을 면제합니다. 단, 암의 경우는 상품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② 이 약관상 "치명적 질병 진단"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식 뇌졸중,급성심근경색, 만성신부전증,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주요 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를 의미하며, [별표 1-치명적질병 I]에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계약액이 면제된 경우, 해당 보증대상자에 한하여 치명적 질병 진단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 나. 이 보증사건 발생일은 치명적 질병 진단의 경우는 최초 진단일로 하며, 주요 장기 이식수술의 경우는

- 장기 이식수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일 또는 질병진단일로 합니다.
- 다.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건당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 라. 보장 제의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상품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 ② 기타 이 상품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 마.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
- ① 회원이 보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②의 서류를 치명적 질병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장기이식수술의 경우 수술일로부터 각각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구비서류 : 보장청구서 및 과거 병력확인서(또는 과거 병력확인인을 회사에 위임할 경우 인감증명서), 치명적 질병 진단입증서류(특정질병진단서서 포함) 또는 장기 이식수술 입증 서류(수술확인서 포함),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그 밖의 서류.
 - ③ 회사는 회원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상품의 해지 및 신용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바. 보장 제의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상품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 ② 기타 이 상품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 사.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
- ① 회원이 보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②의 서류를 치명적 질병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장기이식수술의 경우 수술일로부터 각각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구비서류 : 보장청구서 및 과거 병력확인서(또는 과거 병력확인인을 회사에 위임할 경우 인감증명서), 치명적 질병 진단입증서류(특정질병진단서서 포함) 또는 장기 이식수술 입증 서류(수술확인서 포함),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그 밖의 서류.
 - ③ 회사는 회원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상품의 해지 및 신용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2. 치명적질병 II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에게 보장기간 중에 치명적 질병 진단(주요 장기 이식수술 포함. 이하 같습니다.)을 받은 경우, 회원의 채무액을 면제합니다. 단, 앞의 경우는 상품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② 이 약관상 "치명적 질병 진단"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만성신부전증, 암(암세포내 및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주요 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를 의미하며, [별표 1]에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해당 보장대상자에 한하여 치명적 질병 진단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 나. 이 보장사건 발생일은 치명적 질병 진단의 경우는 최초 진단일로 하며, 주요 장기 이식수술의 경우는 장기 이식수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일 또는 질병진단일로 합니다.
- 다. 치명적 질병 진단의 최초 진단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뇌혈관질환'의 경우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 ② '허혈성심질환'의 경우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 ③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각종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 ④ '암(세포내암 및 기타피부암 포함)'의 경우 해부학적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세침흡입세포검사(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확정된 최초 검사 보고일을 진단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라.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건당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마. 보장 제의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상품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 ② 기타 이 상품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 바.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
- ① 회원이 보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②의 서류를 치명적 질병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장기이식수술의 경우 수술일로부터 각각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구비서류 : 보장청구서 및 과거 병력확인서(또는 과거 병력확인인을 회사에 위임할 경우 인감증명서), 치명적 질병 진단입증서류(특정질병진단서서 포함) 또는 장기 이식수술 입증 서류(수술확인서 포함),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그 밖의 서류.
 - ③ 회사는 회원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상품의 해지 및 신용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치명적 손해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에게 우연한 손해 사고로 인해 치명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상 "치명적 손해"라 함은 손해 사고의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생긴

[별표 2]의 장해를 말합니다.

- ③ 치명적 손해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될 경우 이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나.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 및 채무액 상정일은 치명적 손해의 확정(진단)일로 합니다.
- 다. 보장 제의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 ① 질병으로 인한 치명적 손해의 발생
- 라. 보장 청구 및 구비서류
- ① 회원이 보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②의 서류를 보장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구비서류 : 보장청구서, 손해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③ 회사는 회원이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서비스의 해지 및 신용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 합니다.

4. 치명적 장애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에게 보장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한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된 경우, 회원의 채무액을 면제합니다.
- ② 이 약관상 "치명적 장애"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치명적 장애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해당 보장대상자에 한하여 치명적 장애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 이 보장사건 발생일은 손해의 경우 사고일로 하며, 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로 합니다.

다.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건당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라. 보장 제의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손해 또는 질병의 발생일(손해의 경우 사고일, 질병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365일 이후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② 기타 이 상품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 마. 보장 청구 및 구비서류
- ① 회원이 보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②의 서류를 장애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구비서류 : 보장청구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진단서,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③ 회사는 회원이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상품의 해지 및 신용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5. 장기입원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에게 "장기입원"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채무액을 면제합니다.
- ② 이 약관상 "장기입원"이라 함은 손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치료를 목적으로 최초 입원 개시일로부터 180일 내 60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ㄱ.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 일수를 합산합니다.
- ㄴ.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③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해당 보장대상자에 한하여 장기입원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 이 보장사건 발생일은 입원 개시일로 합니다.

다. 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라. 보장 제의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으로 인한 입원
- ②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요양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유로 입원
- 마. 보장 청구 및 구비서류
- ① 회원이 보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②의 서류를 최종 퇴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구비서류 : 보장청구서, 입원 퇴원확인서,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③ 회사는 회원이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상품의 해지 및 신용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중기입원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에게 "중기입원"이 발생한 경우, 가입증명서에서 정한 금액과 회원의 채무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합니다.
- ② 이 약관상 "중기입원"이라 함은 손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치료를 목적으로 최초 입원개시일로부터 90일 내 30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ㄱ.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 일수를 합산합니다.
- ㄴ.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③ "중기입원"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해당 보장대상자에 한하여 중기입원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 이 보장사건 발생일은 입원 개시일로 합니다.

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①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으로 인한 입원

②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요양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유로 입원

라. 보장 청구 및 구비서류

① 회원이 보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②의 서류를 최종 퇴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구비서류 : 보장청구서, 입원 퇴원확인서,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③ 회사는 회원이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연체료, 상품의 해지 및 신용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특별재해 부분면제

가. 보장 제공 기준

① 보장대상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특별재해"가 발생하여 보장대상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증명서에서 정한 금액과 회원의 채무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합니다.

② 이 상품에서 "특별재해"라 함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 2에 의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위 ①의 "특별대상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란 특별재해지역 선포 당시 보장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합니다. "보장대상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보장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을 제공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나.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

① 회원이 보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 ②의 구비서류를 특별재해구역 선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구비서류 : 보장청구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재산손해확인서(단,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실사를 통해 손해유무를 확인함),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③ 회사는 회원이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상품의 해지 및 신용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비자발적 실업 부분면제

가. 보장 제공 기준

① 보장대상자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실업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가입증명서에서 정한 금액과 회원의 채무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합니다.

② 이 약관상 "비자발적 실업" (이하, 실업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직업을 잃고 직업을 잃은 날 이후에 고용보험법에 의해 신규수급자가 되는 경우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위 ①에 규정된 실업상태의 계속이라 함은 회원이 실업 이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도급, 위임 등에 의해 상시 근로를 하게 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④ 회사는 위 ① 혹은 ②에도 불구하고, 상품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이후에 발생한 실업에 대해서만 보장을 제공합니다.

⑤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해당 보장대상자에 한하여 비자발적 실업 부분면제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 보장대상자에 관한 특징 : 비자발적 실업 보장은 제3조(용어의 정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인 경우에 한하여 보장이 제공됩니다.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한 일용근로자로 1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①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을 경우

② 정년 퇴직한 경우

③ 형법, 직무관련 법률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④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준 경우

⑤ 고용계약에 준한 고용계약 만기로 퇴직한 경우

⑥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⑦ 상품개시 후 90일 내에 실직한 경우

라. 보장 청구 및 구비서류

① 회원이 보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 ②의 구비서류를 비자발적 실업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구비서류 : 보장청구서,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③ 회사는 회원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상품의 해지 및 신용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자동차사고 진단

가. 보장 제공 기준

① 보장대상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가입증명서에 규정된 기간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 가입증명서에서 정한 금액과 회원의 채무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합니다.

② 이 약관상 "자동차사고"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운전"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차장 여부, 엔진의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회원이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나.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자동차사고,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트럭, 타이머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머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기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자동차사고 진단"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해당 보장대상자에 한하여 자동차사고 진단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 이 보장사건 발생일은 자동차사고 발생일로 합니다.

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① 자해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진단

② 6종 건설기계를 작업기기로만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③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라. 보장 청구 및 구비서류

① 회원이 보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②의 서류를 보장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구비서류 : 보장청구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③ 회사는 회원이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연체료, 상품의 해지 및 신용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부분면제

가. 보장 제공 기준

① 보장대상자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관할 경찰서에서 금전상의 피해가 확정된 경우, 가입증명서에서 정한 금액과 회원의 채무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합니다.

② 이 약관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이하, 전화금융사기라 합니다.)라 함은 사기범이 전화로 사람을 기만하여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및 계좌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 송금(이체)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금전손실액이라 함은 법원의 판결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한 보장대상자의 금전 손실액 원금을 말합니다.

③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해당 보장대상자에 한하여 전화금융사기부분면제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 이 보장사건 발생일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발생일로 합니다.

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② 피보험자에게 보령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③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라. 보장 청구 및 구비서류

① 회원이 보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②의 서류를 보장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구비서류 : 보장청구서, 경찰신고 확인서류, 금융거래내역서,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③ 회사는 회원이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연체료, 상품의 해지 및 신용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수속결절 진단 부분면제

가. 보장 제공 기준

① 보장대상자가 신체(의수, 의족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함)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수속결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증명서에서 정한 금액과 회원의 채무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합니다.

② 이 약관상 "수속결절"이라 함은 병표의 "수속결절분류표"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③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결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면제를 1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④ "수속결절"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해당 보장대상자에 한하여 수속결절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 보장사건 발생일은 수속결절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다. 보장 청구 및 구비서류

① 회원이 보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②의 서류를 보장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구비서류 : 보장청구서, 진단서,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③ 회사는 회원이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연체료, 상품의 해지 및 상응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단기입원 상환유예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단기입원”으로 치료받은 경우, 회원의 결제금액의 상환을 유예하여 드리며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단기입원에 계속되는 동안 최장 12개월을 한도로 보장을 제공합니다.
- ② 이 약관상 “단기입원”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함) 등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로서, 보장청구일 이전 45일 동안 입원일이 14일 이상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이전에 단기입원으로 상환유예 보장을 받은 경우 최종 보장청구일 이전의 입원일은 중복하여 입원일수 상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③ 회원은 보장 종료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결제일에 유예된 상환금액을 전액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④ 단기입원으로 인한 상환유예 보장은 회사가 보장 제공을 승인한 날로부터 최장 12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상환유예 보장이 종료된 후 1년 경과한 이후의 단기입원으로 인한 보장 청구는 새로운 단기입원으로 간주하여 다시 12개월을 한도로 상환유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음산,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으로 인한 입원
 - ② 해외여행 및 해외거주 등 해외에서 입원한 경우
 - ③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유로 입원
- 다. 보장 청구 및 구비 서류
- ① 회원이 보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 ②의 구비서류를 매월 회원의 카드 결제일 3영업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구비서류 : 보장청구서, 입원확인서,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③ 회사는 회원이 매월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상품의 해지 및 상응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특별재해 상환유예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특별재해”가 발생하여 보장대상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상품을 신청한 경우, 최초 도래하는 결제일로부터 최장 3개월 동안 회원의 결제금액의 상환을 유예하여 드리며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② 이 상품에서 “특별재해”라 함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 2에 의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보장대상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란 특별재해지역 선포 당시 보장대상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합니다. “보장대상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보장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을 제공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특별재해지역 선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장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나.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
- ① 회원이 보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 ②의 구비서류를 특별재해구역 선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구비서류 : 보장청구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재난손해확인서(단,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실사를 통해 손해 유무를 확인합니다.),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③ 회사는 회원이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상품의 해지 및 상응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 비자발적 실업 상환유예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실업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회원의 결제금액의 상환을 유예하여 드리며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실업상태가 계속되는 되는 기간 동안 최장 12개월을 한도로 보장을 제공합니다.
 - ② 이 약관상 “비자발적 실업”(이하, 실업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직업을 잃고 직업을 얻은 날 이후에 고용보험법에 의해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 규정된 실업상태의 계속이라 함은 회원이 실업 이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업이란 현직적인 수입 유무를 분문하고 근로계약, 도급, 위임 등에 의해 상시 근로를 하게 나 자영업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 혹은 ②에도 불구하고, 상품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이후에 발생한 실업에 대해서만 보장을 제공합니다.
 - ⑤ 회원이 취업한 경우 보장은 종료되며, 회원은 보장 종료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결제일에 유예된 결제금액을 전액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⑥ 비자발적 실업에 의한 상환유예 보장은 회사가 보장 제공을 승인한 날로부터 최장 12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상환유예 보장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의 비자발적인 실업에 의한 보장 청구는 새로운 실업으로 간주하여 다시 12개월을 한도로 상환유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보장대상자에 관한 특칙 : 이 비자발적 실업 보장은 제3조(용어의 정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인 경우에 한하여 보장이 제공됩니다.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한 일용근로자로 1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다.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을 경우
 - ② 정년 퇴직한 경우
 - ③ 형법, 직무관련 법률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 ④ 공공형량,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준 경우
 - ⑤ 고용계약에 준한 고용계약 만기로 퇴사한 경우
 - ⑥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⑦ 상환개시 후 90일 내에 실직한 경우
- 라. 보장 청구 및 구비서류
- ① 회원이 보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 ②의 구비서류를 매월 회원의 카드 결제일 3영업일 이전에 제출하여, 실업 지속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위임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장의 제공이 종료됩니다.
 - ② 구비서류 : 보장청구서,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③ 회사는 회원이 매월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상품의 해지 및 상응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 골절 및 화상 상환유예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상품 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여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골절 또는 화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결제금액의 상환을 최장 3개월간 유예하여 드리며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② 이 약관상 “골절 또는 화상 발생”이라 함은 [별표 3]에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화상의 경우 [별표 3]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상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③ 골절 또는 화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장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회원은 보장 종료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결제일에 유예된 상환금액을 전액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 나.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① 자해 또는 고의에 의한 사고
- 다. 보장 청구 및 구비 서류
- ① 회원이 보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 ②의 구비서류를 회원의 카드 결제일 3영업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구비서류 : 보장청구서, 진단서,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③ 회사는 회원이 매월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상품의 해지 및 상응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 라이프이벤트 상환유예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상품 기간 중에 결혼, 출산, 이사, 대학입학을 하는 경우 회원의 결제금액의 상환을 최장 3개월간 유예하여 드리며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② 결혼, 출산, 이사, 대학입학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장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은 보장 종료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결제일에 유예된 상환금액을 전액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 나. 보장 청구 및 구비 서류
- ① 회원이 보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 ②의 구비서류를 회원의 카드 결제일 3영업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구비서류 : 보장청구서, 아래의 보장사건별 확인 서류,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ㄱ.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혼인관련 입증서류
 - ㄴ.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산의 경우 의사 진단서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 ㄷ. 이사 -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포함), 이사비용 결제 영수증
 - ㄹ. 대학입학 - 입학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 ③ 회사는 회원이 매월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상품의 해지 및 상응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 분	정 의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D47.3 20. 림프종 모양 giant증 L41.2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8.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table> <tr> <th>대상이 되는 질병</th><th>분류번호</th></tr> <tr> <td>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td><td>D00</td></tr> <tr> <td>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td><td>D01</td></tr> <tr> <td>3. 가운데 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td><td>D02</td></tr> <tr> <td>4. 상피내의 흑색종</td><td>D03</td></tr> <tr> <td>5. 피부의 상피내 암종</td><td>D04</td></tr> <tr> <td>6. 유방의 상피내 암종</td><td>D05</td></tr> <tr> <td>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td><td>D06</td></tr> <tr> <td>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td><td>D07</td></tr> <tr> <td>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td><td>D09</td></tr> </table>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가운데 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가운데 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table> <tr> <td>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td><td>D37</td></tr> <tr> <td>2.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 장기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td><td>D38</td></tr> <tr> <td>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td><td>D39</td></tr> <tr> <td>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td><td>D40</td></tr> <tr> <td>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td><td>D41</td></tr> <tr> <td>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td><td>D42</td></tr> <tr> <td>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td><td>D43</td></tr> <tr> <td>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td><td>D44</td></tr> <tr> <td>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td><td>D47.0</td></tr> <tr> <td>10. 단클론성 림프병증</td><td>D47.2</td></tr> <tr> <td>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td><td>D47.7</td></tr> <tr> <td>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td><td>D47.9</td></tr> <tr> <td>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td><td>D48</td></tr> <tr> <td>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td><td>D76.0</td></tr> </table>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 장기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단클론성 림프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D76.0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 장기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단클론성 림프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D76.0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요장기 이식수술	"주요 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기증자로부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또는 골수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기증받아 수혜자에게 이식한 수술을 말합니다.																												

[별표 2] 치명적 상해

구 분	정 의
치명적 상해	"치명적 상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한쪽 또는 양쪽 손목이상을 잃은 경우 2. 한쪽 또는 양쪽 발목이상을 잃은 경우 3. 한쪽 또는 양쪽 시력의 영구적 상실 4. 한쪽 또는 양쪽 청력의 영구적 상실 5.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6.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기능을 전혀 실행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별표 3] 골절, 수족골절 및 화상 분류표

구 분	정 의																																						
골절	"골절"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table> <tr> <th>대상 골절명</th><th>분류번호</th></tr> <tr> <td>1.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td><td>S02</td></tr> <tr> <td>2. 머리의 압착손상</td><td>S07</td></tr> <tr> <td>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td><td>S09.9</td></tr> <tr> <td>4. 목의 골절</td><td>S12</td></tr> <tr> <td>5.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td><td>S22</td></tr> <tr> <td>6.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td><td>S32</td></tr> <tr> <td>7. 어깨 및 팔꿈치의 골절</td><td>S42</td></tr> <tr> <td>8. 아래팔의 골절</td><td>S52</td></tr> </table> <table> <tr> <th>대상 골절명</th><th>분류번호</th></tr> <tr> <td>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td><td>S62</td></tr> <tr> <td>10. 넓적다리뼈의 골절</td><td>S72</td></tr> <tr> <td>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td><td>S82</td></tr> <tr> <td>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td><td>S92</td></tr> <tr> <td>13.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td><td>T02</td></tr> <tr> <td>14.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td><td>T08</td></tr> <tr> <td>15.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td><td>T10</td></tr> <tr> <td>16.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td><td>T12</td></tr> <tr> <td>17. 상세불명 부위의 신체의 골절</td><td>T14.2</td></tr> </table>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상 골절명	분류번호	1.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	2. 머리의 압착손상	S07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S22	6.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팔꿈치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대상 골절명	분류번호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S62	10. 넓적다리뼈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T02	14.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T08	15.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T10	16.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T12	17. 상세불명 부위의 신체의 골절	T14.2
대상 골절명	분류번호																																						
1.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																																						
2. 머리의 압착손상	S07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S22																																						
6.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팔꿈치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대상 골절명	분류번호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S62																																						
10. 넓적다리뼈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T02																																						
14.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T08																																						
15.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T10																																						
16.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T12																																						
17. 상세불명 부위의 신체의 골절	T14.2																																						
수족골절	"수족골절"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table> <tr> <th>대상 골절명</th><th>분류번호</th></tr> <tr> <td>1. 어깨 및 팔꿈치의 골절</td><td>S42</td></tr> <tr> <td>2. 아래팔의 골절</td><td>S52</td></tr> <tr> <td>3.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td><td>S62</td></tr> <tr> <td>4. 넓적다리뼈의 골절</td><td>S72</td></tr> <tr> <td>5.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td><td>S82</td></tr> <tr> <td>6.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td><td>S92</td></tr> <tr> <td>7.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td><td>T10</td></tr> <tr> <td>8.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td><td>T12</td></tr> </table>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상 골절명	분류번호	1. 어깨 및 팔꿈치의 골절	S42	2. 아래팔의 골절	S52	3.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S62	4. 넓적다리뼈의 골절	S72	5.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6.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7.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T10	8.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T12																				
대상 골절명	분류번호																																						
1. 어깨 및 팔꿈치의 골절	S42																																						
2. 아래팔의 골절	S52																																						
3.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S62																																						
4. 넓적다리뼈의 골절	S72																																						
5.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6.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7.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T10																																						
8.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T12																																						

구 분	정 의
화상	“화상”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팔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7. 눈 및 눈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8. 호흡기도의 화상 및 부식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10. 다발성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부 밑조직적의 기타 장애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